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약관

표준약관 제10068호

이용자, 제공자 및 대리인(보호자)은 장기요양급여 중 방문요양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당사자					
이용자 (갑)	성 명	(인)	등 급 (인정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주 소				
	부담금	0%			
제공자 (을)	시설명	수 재가복지센터	급여종류		
	대표자 성 명	백종빈 	연락처	063-222-4286	
	주 소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29-13 롯데@ 상가동1층116호 (효자동1가)			
대리인 또는 보호자 (병)	성 명	(인)	관 계	'갑'의()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이동 전화)	
	주 소				

⑦ ‘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당월 말일 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계약통 보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 【 계약자 의무 】

① '갑'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급여비용 납부의무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 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급여비용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 【 계약해지 요건 】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기간을 '갑'(또는 '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한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검진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 【 계약의 해지 】

① '갑'(또는 '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 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 【 급여비용 납부 】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을'은 전월 계약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비용을 매월 3 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5 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이용료 세부내역서를 전자메시지, 카톡, 이메일, 통신등 으로 통보한다.

③ '갑'은 매월 급여비용을 수 재가복지센터 통장계좌로 10 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 농협 351 -

· 43 (예 금 주 : 수 재가복지센터)

④ '을'은 '갑'이 요구시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9조 【 재계약 】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 【 건강관리 】

①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 【 위급시 조치 】

① '을'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의료기관,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을'은 즉시 '병'에게 통보한다.

제12조 【 개인정보 보호의무 】

-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 【 기록 및 공개 】

- ①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 【 배상책임 】

- ① '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갑'(또는 '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 1. 장기요양요원(또는 '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2. 장기요양요원(또는 '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 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 2.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 【 기타 】

-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기로 한다.

상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갑'과 '병'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을' 시설장

상기 내용을 읽고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갑' 이용자

(인)

'병' 대리인(보호자)

(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 정보수집. 이용기관명 : 수 재가복지센터

* 수집 및 이용목적

- ① 계약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기타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는 기초정보
- ② 관련기관의 정보제공 요청시 필요항 정보
- ③ 기타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

수집정보의 활용범위

- ① 본인에게 센터 목적사업 정보제공 시 활용
- ② 타기관간의 서비스 연계 시 정보제공 및 활용
- ③ 관련기관의 정보제공 요청 시 제공
- ④ 기타 센터의 이익 향상 사업 등에 활용

* 보유 및 이용기간

관련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유 및 이용. 제공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또는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및 이용기간이 종료된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계약자 :

인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4년

○방문요양의1회당이용시간별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630	150분 이상	48,250
60분 이상	24,120	180분 이상	54,320
90분 이상	32,510	210분 이상	60,530
120분 이상	41,380	240분 이상	66,770

○방문목욕의1회당이용시간별급여비용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목욕차량을 이용(차량내 목욕제공)	목욕차량을 이용(가정내 목욕제공)
47,670	84,670	76,340

1.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비누,수건, 욕조, 목욕의자,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2.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제25조1항의 각분류에 따른 급여비용 의 80%를 산정한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4년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0~9.0%